

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HDC베트남적립식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20.10.05.
3. 주요 정정사항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25조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<u>영업일</u>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25조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<u>영업일</u>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다만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<신 설>	부 칙
	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매입방법		<p>1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</u> 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</u> 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	<p>1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</u> 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</u> 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		
가. 매입		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, ...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</p> <p>(가)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.</p> <p>(나)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</p>	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, ...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</p> <p>(가)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.</p> <p>(나)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</p>

	(다) <생략>	(다) <현행과 같음>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	
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	<p>(1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</p> <p><신설></p> <p>장내 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<u>파생상품시장</u>에서 공표하는 <u>가격</u>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</p> <p>외화표시 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하며,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<u>최종시가로</u> 평가</p>	<p>(1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</p> <p>- <u>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.</u></p> <p>장내 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<u>파생상품시장 (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)</u>에서 공표하는 <u>가격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</p> <p>외화표시 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하며,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<u>최종시가(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로 평가</p>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매입방법		<p>1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 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 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	<p>1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 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 <p>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 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</p>

<끝>.